

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8 - 112호

월계2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

노원구 월계동 633-31번지 일대 월계2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10월 25일

노 원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주택재건축 정비사업
- 나. 명 칭 : 월계2(인덕마을)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노원구 월계동 633-31번지 일대
- 나. 면 적 : 43,303.00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가. 성 명 : 월계2(인덕마을)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주평
- 나. 주 소 :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 334 그랑디오피스텔 8층 801호

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8년 10월 18일

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<변경없음>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<변경>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공급세대수						근린생활시설 (㎡)	
	계	59A	59B	84A	84B	84C	대지 면적	건축 연면적
계	859	260	36	263	260	40	811.67	3,339.69
토지등소유자	195	67	31	92	4	1	811.67	3,339.69
보 류 지	12	3	1	5	2	1		
일반공급	583	121	4	166	254	38		
소형주택	69	69	-	-	-	-		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<변경>

구 분	신 설			폐 지			비 고
	계	도로	공원	계	도로	무상양여	
규모(㎡)	9,133.00	6,705.00	2,425.00	4,925.00	4,925.00	4,349.00	

라.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변경

마. 종전토지 및 건축물 총 가액 변경

바. 보류지 변경

6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주택사업과(☎2116-3914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